

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3.2.23] [법률 제11357호, 2012.2.22, 제정]

출처 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[법률 개요]

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'13.2.23일부터 시행됨. 이 법은 FTA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, AI 등 각종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농가 피해 증가, 이상 기후에 따른 재해증가,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경쟁력 완화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바, 축산계열화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가축 또는 축산물의 수급조절,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, 사육경비 지급기준,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,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

이에 대한 추가 자세한 사항을 정하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현재 제정 중에 있음.

[주요내용]

가. 농림수산물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공동으로 일정기간 동안 일정지역의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함(제5조).

제5조(수급조절 등) ① 농림수산물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(이하 이 조에서 “생산자등”이라 한다)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축의 사육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계열화사업자가 공동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생산자등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·유통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해당 축산물의 생산자등의 대표나 해당 생산자등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는 해당 가축(축산물을 포함한다)의 3분의 2 이상을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생산자등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기준과 구체적인 절차,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.

나.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와 가축의 사육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열화사업자가 공급하는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등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, 농림수산물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 등에게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(제7조).

제7조(계약서의 작성 등) ①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와 가축의 사육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을 체결한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.

1. 계열화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축, 사료 등 사육자재의 품질

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

2. 계약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
 3. 사육경비의 내역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에 관한 사항
 4. 사육시설 등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농림수산물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으며, 계열화사업자 등에게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
- ③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,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계약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사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다.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게 지급하는 사육경비는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, 사육경비의 지급기일은 가축의 출하를 완료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25일 이내에서 최단기간으로 정하도록 함(제8조).

- 제8조(사육경비의 지급 등) ①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 지급하는 사육경비는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로부터 가축을 출하받은 경우에는 가축의 검사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- ③ 사육경비의 지급기일은 가축의 출하를 완료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25일 이내에서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25일을 초과할 수 있다.
- ④ 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사육경비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일 기준 25일을 초과하여 정한 경우에는 가축의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본다.
- ⑤ 계열화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육경비를 지급기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
라. 계약사육농가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대등한 계약관계를 형성하고 신뢰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계약사육농가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(제14조).

- 제14조(계약사육농가협의회) ① 계약농가는 계열화사업자와 상호 대등한 계약관계 형성과 신뢰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계약사육농가협의회(이하 "농가협의회"라 한다)를 설

치할 수 있다.

- ② 계열화사업자는 농가협의회로부터 계약내용, 가축·사료 등의 품질, 사육·질병관리 운용계획 등에 대하여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농가협의회가 계약농가를 대표하거나 대리하여 계열화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.
- ④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가 농가협의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등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마.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는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(제15조).

- 제15조(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는 대등한 계약관계를 도모하고 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국단위 축산단체에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(이하 "계열화협의회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계열화협의회는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제14조제2항에 따라 농가협의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
 2.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의 분쟁에 대한 사전 조정·협의
 3. 그 밖에 계열화사업 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안으로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계열화협의회는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.

바. 농림수산물부에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(제16조부터 제29조까지).

- 제16조(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) 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부에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조정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- ② 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축종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